#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

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, 학생연구자 처우,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·석사·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 - 1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 - 2.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  - 3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
- **제3조(산학협력단의 의무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(개정 2024. 5. 27.)
  - 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- 3.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  - 4.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
  - 5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,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우리 대학교 「안전관리규정」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  - 6. 학생인건비부당회수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4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**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(개 정 2024, 5, 27.)
  - 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
  - 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
  - 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산정,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
  - 4. 학생인건비부당회수(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·운용 포함) 방지 노력
- **제5조(학생연구자의 의무)**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(개정 2024. 5. 27.)
  - 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
  - 2.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
  - 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

제6조(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)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
#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

- 제7조(연별·반기별 활용계획 수립)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, 구체적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,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- 제8조(연구참여확약 체결)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, 학기(또는 학년)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며, 이 경우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  - 1. 연구 주제 및 분야, 주요 참여과제명, 연구수행내용,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  - 2. 참여기간,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야 한다.
  - 3.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.
- 제9조(연구참여확약 변경)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,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23. 3. 1., 2024. 5. 27.)
  - 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  - 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  - 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  - 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 - 5.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
- 제10조(업무범위 제한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·외 기여·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.
- 제11조(학업·연구권 보장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부당업무 거부권 보장)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#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

**제13조(통합관리계정 설정)**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(신설 2024. 5. 27.)
- **제14조(학생인건비 계상기준)**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(개정 2023. 3. 1., 2024. 5. 27.)
  - 1. 학사과정: 월 1,300,000원
  - 2. 석사과정: 월 2,200,000원
  - 3. 박사과정: 월 3,000,000원
  - 4. 석·박사통합과정: 월 3,000,000원
  - ② (삭제 2023. 3. 1.)
  - ③ 산학협력단장은 소속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10%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(신설 2024. 5. 27.)
- 제15조(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)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의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, 균등지급 체계 마련,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  - ② (삭제 2024. 5. 27.)
- 제16조(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- 제17조(학생인건비 지급) ① 산학협력단장, 연구책임자,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또는 학년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 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.
  -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18조(학생인건비 관리)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,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- 제19조(자체점검)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24, 5, 27.)
- 제20조(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)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

제21조(인격권 보장) 누구든지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·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
- 제22조(건강과 휴식 보장)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연 구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.(개정 2024, 5, 27.)
- 제23조(안전 보장)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우리 대학교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규정」에 따른다.(개정 2024, 5, 27.)
- 제24조(재정운영 정보 공개)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있으며,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25조(고충·상담 창구운영)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,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, 비공개 원칙이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- 제26조(위반 시 조치)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, 감사팀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,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5. 27.)

### 제5장 보칙

(신설 2023. 3. 1.)

**제27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을 따른다.(신설 2023. 3. 1.)

### 부칙

- 1. 이 규정은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- 2.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